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93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이상희 · 신성범 · 김성원  
최수진 · 박상용 · 박준태  
엄태영 · 안철수 · 김장겸  
한지아 · 구자근 · 정동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 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증요구 등) ①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에 대한 선거인·투표인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 적법성 또는 선거·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그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요구는 선거 또는 투표에 대한 개표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요구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증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27조의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증요구 등) ①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에 대한 선거인·투표인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 적법성 또는 선거·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그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요구는 선거 또는 투표에 대한 개표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u></p> <p><u>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요구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u></p>